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(3차)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4186(2014.10.27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'움카민'의 정제 등재에 따라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,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 예상으로 '14.9.1자로 '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'에 신규 등재되는 '움카민정'과 관련한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'움카민시럽 등'에 대해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127호, 2013.9.1)」 [일반원칙] 내용액제(시럽 및 현탁액 등)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총 2개월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 등에서 환자의 복용 편의 및 처방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약제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요청한 바,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.

- 다 음 -

○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-127호, 시행일 '13.9.1)」 [일반원칙] 내용액제(시럽 및 현탁액 등)의 적용과 관련하여,

- '14.9.1. 자로 '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'에 신규 등재되는 '움카민정'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 '움카민시럽 등'의 [일반원칙]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('14년 11월) 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527 (2014.10.27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

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